

##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8. 6.(목) 17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 
송도균 부위원장  
이경자 위 원  
이병기 위 원  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 - 가. 성원보고
  - 나. 국민의례
  - 다. 개회선언
 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**바. 의결사항**

**1)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(2009-35-162)**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17조에 따라 (주)신라케이블방송, (주)아름방송네트워크의에 대하여 재허가 여부를 심의하고,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는 것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허가조건

| 사업자명        | 조 건 내 용  |
|-------------|--|
| (주)신라케이블방송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%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</li> <li>○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</li> <li>○ 재허가 기간동안 이사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를 방송전문가·변호사·회계사·방송구역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 사외이사로 구성·운영하여야 하고 이사회 개최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결과를 2009년 9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2009년 10월 31일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선아이앤씨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 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상환하고 주권을 반환 받아야 하며, 매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주 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과 지급보증, 담보를 해제하여야 하며, 재허가 이후에도 대여, 지급보증, 담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 <li>○ 최다액출자자인 (주)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등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 개선을 포함하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.</li> </ul> |
| (주)아름방송네트워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%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</li> <li>○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</li> <li>○ 재허가 기간동안 이사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를 방송전문가·변호사·회계사·방송구역 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 사외이사로 구성·운영하여야 하고 이사회 개최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결과를 2009년 9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및 공공성·공익성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매출액의 1% 이상을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을 이행하고,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2010년 1월부터 최다액출자자인 (주)서로넷 등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를 중단하는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지역채널 운용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채널 외주제작회사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하고,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
## 2)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(2009-35-163)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9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(사)금강에프엠방송 등 8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에 대한 정규 허가여부를 심의하고,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안대로 의결함.

### ○ 주요 내용

- (사)금강에프엠방송, (사)문화복지미디어연대, (사)광주시민방송, (사)성서공동체에프엠, (사)관악공동체라디오, (사)마포공동체라디오, (사)영주에프엠방송 등 7개 시범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함.

#### < 허가 조건 >

-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'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'의 편성 금지
- 인력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(기술인력 포함)을 수립하여 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-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,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
-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, 주파수 회수, 재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

- (사)관악공동체라디오, (사)마포공동체라디오, (사)영주에프엠방송 등 3개 시범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여 허가함.

|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가 허가 조건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(사)관악공동체라디오<br>(사)마포공동체라디오 | ○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외부인이 2인 이상 포함된 자체 심의 위원회를 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구성·운영할 것 |
| (사)영주에프엠방송                 | ○ 방송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                  |

- 심사결과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(사)나주방송에 대하여는 허가를 거부함. 기존 시범방송용 소출력FM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방송국 허가만료일에 자동 종료함(재허가를 거부함).
- 허가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은 1와트로 하며, 방송분야는 '음악, 문화, 정보 제공(지역관련 소식에 한정)'으로 하고, 허가유효기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3년으로 함.

## 사. 보고사항

### 1)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사업의 소유·경영 규제 완화, 간접·가상 광고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방송법」 개정(09. 7. 31.)에 따라,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원안대로 접수함.

### ○ 주요 개정 내용

#### 1.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 및 공개 (안 제4조제2항, 제3항)

- (개정사유) 신문이 지상파, 종합편성·보도PP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,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 및 공개 방법을 정할 필요
- (개정내용) 해당 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인증한 자료를 제출
  - 신문은 주식·지분의 취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, 방통위는 1개월 이내에 신고 사실과 제출 자료를 공개

#### 2. 구독률 산정 기준 (안 제4조제4항)

- (개정사유) 지상파, 종합편성·보도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문의 진입제한(구독률 20% 초과금지)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독률 산정기준을 정할 필요
- (개정내용) 인구주택총조사(통계법 제17조)의 전체 가구 수 대비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

#### 3.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(SO)의 상호진입 범위 (안 제4조제5항)

- (개정사유) 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 간 상호 경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상호 진입 허용범위를 정할 필요
- (개정내용) 지상파방송의 SO 진입은 33%, SO의 지상파방송 진입은 33%로 허용범위를 정함

#### 4.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, 중계유선방송사업자(RO),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합, 보도, 홈쇼핑 PP)의 허가·승인 유효기간 (안 제16조제1항)

- (개정사유) SO, RO 등의 허가·승인 유효기간 허용범위가 5년에서 7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유효기간 재조정 필요
- (개정내용) 허가·승인 유효기간을 5년(기존 3년)으로 연장하되,
  - 재허가·재승인 심사결과 시청자 권익보호, 공적책임 실현, 공익성·공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
  - 신규사업자의 최초 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신청하는 재허가·재승인부터 적용

## 5. 방송연장 명령제도 및 허가 등의 유효기간 단축 등 (안 제17조)

- (개정사유) 허가·승인 취소 후 방송연장 수행명령 제도 및 허가·승인 유효기간 단축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 규정 필요
- (개정내용) 허가·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의 승계사업자 정의, 방송사업 허가·승인 취소 사업자에 대한 방송연장 수행명령 내용 및 시청자 고지 의무 부과 - [별표1]의 처분 기준에서 '업무정지' 처분을 '업무정지 및 유효기간 단축'으로 개정

## 6.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 제21조의4)

- (개정사유) 방송에서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필요
- (개정내용)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추가 직무, 위원 자격 및 구성, 회의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
  - ※ 개정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간 유예된 시청점유율 제한(법 제69조의2)에 따른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은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

## 7.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규정 삭제 (안 제21조의2)

- (개정사유)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('08.6.26)에 따라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방송 내용 심의와 동일하게 사후심의 체계로 전환할 필요
- (개정내용)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인 시행령 제21조의2를 삭제

## 8. 가상광고 시행 기준 신설 (안 제59조의2)

- (개정사유) 가상광고 도입에 따라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
- (개정내용) 허용장르, 허용기준, 허용방식, 운영지침수립 등을 신설

## 9. 간접광고 시행 기준 신설 (안 제59조의3)

- (개정사유) 간접광고 도입에 따라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
- (개정내용) 허용분야 등 일반원칙, 허용기준, 고지의무, 운영지침수립, 자료제출 조항 등을 신설

## 10. 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 [별표 4]

- (개정사유) 방송광고 사후규제 차원에서 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
- (개정내용) [별표 4]에 '허위·과장 광고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'를 신설하고, 과태료 부과기준을 1,000만원으로 설정

## 11. 심의규정 등 위반시 과징금 산정기준 [별표 5]

- (개정사유)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, 시청자불만처리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필요
- (개정내용) [별표 5]에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, 시청자불만처리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명시

## 12. 기타 규제완화 등이 필요한 사항

### 가.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중 가중과 감경 세부 기준 마련 [별표 1]

- (개정사유) 「행정제재처분합리화 세부기준」에 의하여 방송법 시행령 상의 행정제재 처분의 질차와 기준을 개선할 필요
- (개정내용)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규정

### 나.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(안 제3조)

- (개정사유) 가족사회의 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
- (개정내용) 특수관계자 중 친척의 범위를 「자본통합시장법」, 「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과 동일하게 6촌 이내로 완화

### 다. 기금부과 시 이의신청 신설 (안 제22조)

- (개정사유)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으로 부담금별로 사후 권리 구제방안을 도입('09. 6.).
- (개정내용) 방송발전기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, 이의신청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

## ○ 추진 계획

-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, 부패·통계영향평가 : ~ 8월 말
- 자체규제심사 및 규제위 규제 심사 : ~ 9월 중
- 위원회 의결 : 규제위 규제 심사 직후
-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·국무회의 : ~9월 말

## 아. 기 타

### 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09. 8. 19.(수) 10:00에 개최하기로 함.

## 6. 폐 회 (18:25)

- ※ 이경자 위원과, 이병기 위원은 보고안건 「가」 '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' 보고 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.